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1032
--------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4. 9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## 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정이유

비슬산 1,000m 고지를 탐방하는 교통약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인 친환경 전기 셔틀버스의 관리·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이용료 등(안 제3조 ~ 제6조)
- 나. 운행 시간 등(안 제7조 ~ 제8조)
- 다. 탑승객 준수사항 등(안 제9조 ~ 제11조)
- 라. 위탁 운영 등(안 제12조 ~ 제14조)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04조 및 제144조
-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4) 입법예고
  - (가) 예고기간 : 2014. 8. 22. ~ 9. 2.
 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(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달성군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비슬산 1,000m 고지를 탐방하는 교통약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인 친환경 전기 셔틀버스의 관리·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소인”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탑승객을 말한다.
2. “대인”이란 중학생 이상인 탑승객을 말한다.
3. “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”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이란 비슬산의 일정 노선·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「관광진흥법」 상의 유기 기구(주행형)인 전기 셔틀버스를 말한다.

**제3조(이용료)**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.

**제4조(이용료 징수 등)** ① 시설의 이용료는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.

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(이용자가 운행구간 중 일부라도 이용한 경우 전체 구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)에서 취소하는 경우,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③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

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.

④ 징수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이용료 면제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빈 또는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
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3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**제6조(이용료 등의 게시)** 제3조에 따른 이용료와 제7조에 따른 운행 및 이용시간, 제8조에 따른 운행 노선·구간에 관한 내용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운행 및 이용시간)** ① 시설의 운행시간은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하며, 계절상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예정된 운행횟수를 감축할 수 있다.

1. 폭풍우, 홍수, 폭설 등 기상이변 및 그 밖의 사유로 운행이 위험한 경우
2. 시설의 고장 등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3. 계절상황 등의 사정에 따라 탑승객의 수가 매우 적은 경우

**제8조(운행 노선·구간)** 시설의 운행노선은 비슬산 군립공원 주차장으로부터 비슬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, 휴양림 삼거리, 금수암전망대를 지나 대견사 입구까지를 연결하는 것으로 하되, 군수는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행구간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.

**제9조(탑승객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)** ① 탑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운행질서의 유지 및 위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

1.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
  2. 만 7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함
  3. 운전자 또는 시설 운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탑승권을 제시하여야 함
- ② 탑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정원초과 승차, 운행시간 외 또는 운행 노선·구간 외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
  2. 시설 내 음주행위, 음란행위 및 그 밖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  3. 시설의 설비나 안전장비 등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
  4. 폭발물, 인화물질 등을 휴대하여 시설에 탑승하는 행위
  5. 시설에 탑승하여 시설 밖으로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
  6. 시설 운행 중 운전자에게 폭언,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

**제10조(이용의 제한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기 셔틀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제9조 규정에 정한 탑승객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
2. 감염병질환자
3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7세 미만의 자,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운 자
4. 그 밖의 사유로 다른 탑승객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**제11조(변상조치)**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1. 시설을 훼손, 오손 또는 파손하거나 시설의 안전장비를 훼손하였을 때
2. 이용권 판매소의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였을 때

### 3. 그 밖에 시설의 운행과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

**제12조(위탁운영)**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군에서 출연하거나 군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 우선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, 관리책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.

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. 다만, 군에서 출연하거나 군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위탁 관리·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13조(손해배상)** 위탁 받은 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시설의 운행, 운영 등과 관련한 시설물을 훼손,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지도·감독)** 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준용)**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그 밖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「공

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」 등을 준용한다.

**제1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7조(시설의 안전운행 및 사고의 예방)** 군수 및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의 운행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표 1】

이 용 료  
(원)

구 分		요 금
면도	소인	2,000
	대인	3,000
왕복	소인	3,000
	대인	5,000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20인 이상 단체에 한해 20% 할인</li> <li>· 부가세 10% 포함</li> </ul>		

## 참고 1

## 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지방자치법 제144조(공공시설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

##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(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)

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.

1.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「우편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
2. 「철도건설법」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
3. 부동산임대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·숙박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 - 가. 국방부 또는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른 국군이 「군인사법」 제2조에 따른 군인, 「군무원인사법」 제2조에 따른 군무원,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·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
  - 나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
  - 가.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
  - 나.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